



[20212471]

<https://warosalad.com>

[2021. 10. 07]

[2024. 06. 21]

[와로샐러드]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와로]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와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935번길 4-1, 201호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55-761-0429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55-761-0429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와로	와로샐러드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935번길 4-1, 201호			
	법인 설립등기일 ^①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9.01.31	2019.04.29	오형래	055-761-0429	/
	법인등록번호	191111-0084405	사업자등록번호	179-81-0144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①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오형래	와로샐러드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935번길 4-1, 201호		
			대표자 ^②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오형래	055-761-0429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와로샐러드]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①	와로샐러드	
상 호 ^②	와로샐러드 OO점	
상표(서비스표) ^③		출원일자 : 2019.08.02. 출원번호 : 4020190120209 등록일자 : 2020.08.12. 등록번호 : 4016331700000
광 고 ^④	해당 사항 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 사항 없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①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②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2023년	244,936	219,689	25,247	289,482	-143,896	9,356
2022년	142,267	126,376	15,891	284,871	-131,199	-2,858
2021년	127,790	108,959	18,750	274,559	-116,291	2,281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①은 다음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① 명단 및 사업경력^②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③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④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오형래	대표	2019.01.31.~현재	(주)와로 대표	경영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①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①	사업내용 ^②
해당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①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②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③)
와로샐러드	가맹점 상호로 사용	2019.08.02 출원 2020.08.12 등록	출원번호 : 4020190120209 등록번호 : 4016331700000	주식회사 와로	2030년 08월 12일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와로샐러드] 가맹사업 현황

1. [와로샐러드] 을 시작한 날: 2020년 5월 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1년 3월 12일)

2. [와로샐러드]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와로	와로샐러드	오형래	2019.01.31.~ 현재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935번길 4-1, 201호

3. [와로샐러드] 업종

영업표지	업종	
와로샐러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외식 서비스	샐러드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와로샐러드]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3.12.31.			2022.12.31.			2021.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6	5	1	5	4	1	5	4	1
서울	1	1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2	2	0	1	1	-	-	-	-
강원	-	-	-	-	-	-	-	-	-
충북	2	2	0	2	2	0	2	2	0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1	0	1	2	1	1	3	2	1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와로샐러드]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①	계약 해지 ^②	명의 변경 ^③	연말
2023	4	2	1	0	0	5
2022	4	1	0	1	0	4
2021	1	3	0	0	0	4

[와로샐러드]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④

6. [와로샐러드]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바로 전 3년간 [와로샐러드]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단위: 개)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①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②

당사는 2023년도에 전체 가맹점이 5곳이 존재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④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⑤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⑥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⑦	5	85,568	8,086	103,778	10,043	51,216	5,114	
서울	1	해당없음						6개월 미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2	해당없음						5곳미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2	해당없음						5곳미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은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6개월 이상^⑧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2023년 8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1개 가맹점(서울지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5개가 아닌 실제 4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와로샐러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와로샐러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3	5	606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①의 일반 정보

당사는 [와로샐러드]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가맹본사 이외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와로샐러드]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40]쪽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①	수단 ^②	기간 ^③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④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37,319	-	-	
광고	(비공개)	-	-	-	-	-
관측	-	-	-	-	-	

10.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진주금융센터	www.shinhan.com	1599-8000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사전등록 → 가맹점사업자 가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고,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사전등록 했음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절차에 따라 에스크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① 신한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에 접속 후 조회센터 클릭
→ ‘프랜차이즈 B2B’ 선택
- ② 로그인 화면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 ③ 가맹본부명을 클릭
- ④ 가맹점 사업자의 일반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약관 동의를 하고 “등록” 클릭
- ⑤ 해당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여 전자서명을 하면 에스크로 가입이 완료
- ⑥ “가맹금 입금계좌번호”의 계좌로 가맹금 입금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주)서울보증보험의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위의 가맹금 예치과 관련한 내용은 귀하에게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와로샐러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 일반 가맹점

FAI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 ^③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가입비	가입비	4,4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매뉴얼 등 자료제공	1,100			
	합계	5,500			
교육비	3,3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나. 취약계층 가맹점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 ^③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0				
가입비	가입비	면제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매뉴얼 등 자료제공	면제				
	합계	0				
교육비		면제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일반 가맹점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③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1,000]	계약 후 즉시	계속가맹금의 미지급, 계약기간 중 대금의무 불이행 등	/

나. 취약계층 가맹점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③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면제]	계약 후 즉시	계속가맹금의 미지급, 계약기간 중 대금의무 불이행 등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일반 가맹점	취약계층 가맹점
가맹비	5,500	면제
개점 전 최초교육비	3,300	면제
계약이행 보증금	1,000	면제
합 계	9,800	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아래 표의 창업비용은 일반 가맹점이나 취약계층 가맹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지급대상 ^②	금액 ^③	면적 ^④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⑤
인테리어	(협력업체)	22,000	2,200	별도계약	자재발주 전 계약취소	자재발주 후	
가구	(협력업체)	2,200	220	별도계약	제작 전 계약취소	제작개시 후	
주방 설비 및 집기	(협력업체)	16,500	1,650	별도계약	배송 전 계약취소	배송 후	
외부간판 및 내부 싸인 인쇄물	(협력업체)	3,300	330	별도계약	제작 전 계약취소	제작 후	
메뉴보드	(협력업체)	1,000		별도계약	제작 전 계약취소	제작 후	
포스기기	(협력업체)	1,200		별도계약	입고 전 계약취소	입고 후	
기타 초도물품	(협력업체)	3,300		별도계약	입고 전 계약취소	입고 후	
총계		49,500	4,400				

[위 표의 금액은 10평 (1평=33㎡)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면적 크기 및 개별 점포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사업장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 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직접 인테리어를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도면제공과 관리·감독에 따르는 비용으로 평당 22만원<부가세 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도면제공과 관리·감독에 따르는 비용은 평당 11만원<부가세포함>]

♣ 점포는 15평 면적을 추천하고, 최소 점포면적으로 10평 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 관련 직접 시공 시 감리비 및 별도사항

*상기 표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수도, 전기, 가스 공사가 미포함된 내역이며, 점포 상황에 따라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별도사항 : 도시가스공사, 전기승압공사, 냉난방비, 외부공사, 테라스, 샷시, 조형물, 철거공사, 상하수도 등

▶간판공사는 인허가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주체	선정 기준 ^②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 입지선정의 주체는 가맹희망자입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점포면적에 따른 외견상의 조연과 해당지역의 부동산 업자를 알선할 수는 있습니다.

- ① 담당 임원이나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직접 입지를 정할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② 선정까지의 절차를 나타내되, 가맹희망자와의 협의 여부, 가맹본부가 정한 입지를 가맹희망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해결 방법 등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①	계약·채용 기준 ^②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특별한 기준 없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와로샐러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카탈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당사는 가맹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 납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계약에 명시된 대로의 이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지급대상 ^②	금액 ^③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④
로열티	가맹본부	월 22만원	매월 말일	-	-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협의하여 결정 (가맹본부 50% 가맹사업자 50% 분담될 수 있음)	청구를 받은 후 2주 내	광고 미실시	광고 시행	-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판촉	판촉 시행	-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실시 10일전			교육필요시 진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⑤	각 분야 점주선정 업체	정보공개서 VII-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좌동	좌동	변경 후	
점포환경개선 비용	각 분야 점주선정 업체	정보공개서 VII-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좌동	좌동	교체/보수 후	관련 페이지 참조
지연이자	각 지급대상 업체	연 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	--	--	--	--	--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내역은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와 가맹점주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구분 ^① (기준: 2023년)	내용 ^②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③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④	해당 없음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 ^③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갱신 가맹비 (일반)	2,200	재계약 직후	소멸성	소멸성	
갱신가맹비 (취약계층)	0	재계약 직후	소멸성	소멸성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와로샐러드]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공정위]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아래와 같은 부담이 발생합니다.

가. 양수인이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을 조건으로 양수받은 경우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항 목	금 액	비 고
가맹비 중 매뉴얼 등 자료제공대가	1,100 (취약계층은 면제)	부가세 포함
교육비	3,300(취약계층은 면제)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1,000 (취약계층은 면제)	1,000부가세 없음
합 계	5,400	

나. 양수인이 신규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항 목	금 액	비 고
가맹비	가입비 4,400	부가세 포함
	매뉴얼 등 자료제공대가 1,100	
	합계 5,500 (취약계층은 면제)	
교육비	3,300 (취약계층은 면제)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1,000 (취약계층은 면제)	부가세 없음
합 계	9,800 (취약계층은 면제)	

이러한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기간만료, 갱신의 거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을 상실하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가맹계약서 제35조)]

- [1) 귀하는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외부간판, 배너 및 기타 표시물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2) 귀하는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표시물 등을 변형하여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귀하는 협력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기기가 있는 경우, 이를 임의 철거하지 못하며 지원 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합니다.
- 4) 귀하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을 당사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상호 협의하여 반환품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5) 귀하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 하거나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 6)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 내용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와로샐러드]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와로샐러드]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①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칭 ^②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③	경제적 이익의 내용 ^④	비고
-----------------	----	--	-------------------------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와로셀러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와로셀러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①	제한내용 및 조건 ^②	위반시 책임 ^③	비고 ^④
소불고기 샐러드	당사의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명성의 유지를 위하여 왼쪽에 기재된 품목만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FAI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회 위반: 서면 통보 후 시정요구 2회 위반: 1주일 전 서면 통보 후 물품 공급 중단 및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훈제오리 샐러드			
새우 샐러드			
닭목살 샐러드			
버섯 샐러드			
닭가슴살 샐러드			
미역국수 샐러드			
소불고기 wrap 샌드위치			
바비큐치킨 wrap 샌드위치			
에그베이컨 wrap 샌드위치			
핫치킨 랩 샌드위치			
바비큐치킨 랩 샌드위치			
에그베이컨 랩 샌드위치			
소불고기 호밀 샌드위치			
핫치킨 호밀 샌드위치			
에그베이컨 호밀 샌드위치			
치킨텐더 호밀 샌드위치			
샐러드 베이스			
wrap포케 베이스			
소불고기숙주덮밥			
닭가슴살 나시고렝			
닭가슴살 카레 볶음밥			
훈제오리 야채 볶음밥			
간장참깨드레싱			
어니언칠리드레싱			
발사믹드레싱			
베지오리엔탈드레싱			
사과고추장드레싱			
크림시저드레싱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신상품을 출시하게 되므로 본 정보공개서 에 표시하는 품목 외에도 추가로 판매품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전에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 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추가적인 제한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①	상품·용역명 ^②	제한내용 및 조건 ^③	위반시 책임 ^④	비고 ^⑤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1회 위반: 서면 통보 후 시정 요구 2회 위반: 1주일 전 서면 통보 후 물품 공급 중단과 시정 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다른 가맹점 사업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①	권장가격(단위: 원) ^②	가격 통보 방법	비고 ^③
소불고기 샐러드	10,900	변경 시 서면(전자문서 포함) 및 별도 통지	2023년 12월 기준
훈제오리 샐러드	9,600		
새우 샐러드	9,600		
닭목살 샐러드	8,900		
버섯 샐러드	8,900		
닭가슴살 샐러드	8,900		
미역국수 샐러드	8,200		
핫치킨 랩 샌드위치	7,400		
바비큐 치킨 랩 샌드위치	7,900		
에그베이컨 랩 샌드위치	6,900		
소불고기 wrap 샌드위치	8,700		
바비큐 치킨 wrap 샌드위치	7,600		
에그베이컨 wrap 샌드위치	6,900		
소불고기 호밀 샌드위치	7,900		
핫치킨 호밀 샌드위치	6,900		
에그베이컨 샌드위치	6,600		
치킨텐더 샌드위치	6,200		
소불고기 숙주 덮밥	7,500		
닭가슴살 나시고랭	7,500		
닭가슴살 카레 볶음밥	7,500		
훈제오리 야채 볶음밥	7,5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①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②	
	가맹본부	계열회사
와로샐러드에서 판매하는 품목 및 영업방식과 영업형태가 동일한 서비스	와로샐러드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①	설정방법 ^②
점포 반경 1,000m (일반, 취약계층 공통)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와로샐러드'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와로샐러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 있는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2023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비율	77%	23%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와로샐러드]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8조 2항 각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와로샐러드]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계약의 갱신 당시에 물품공급 중단사유 어느 하나에 귀하가 해당하는 경우	제 28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는 아래와 같은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제 3 조 2항	28 조 각호 및 34조 1 항 1 호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 4 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제 4조의 1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 12 조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제 17 조	
○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18 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자 명의로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 19 조	
○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 21 조 1 항	
○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제한 미준수 및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제 22 조 2항 ~ 3 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 22 조 4 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 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지점 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제 24 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제 25 조	
○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제 27 조	
○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 29 조	
○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제 31 조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 32 조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제 33 조 2 항 ~ 4 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제 33 조 7 항	
○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 39 조 1 항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제 28 조 20 호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 34 조 1 항 2 호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조 제 1 항 본분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 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의 경우 종전 계약기간을 포함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요구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 년 이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 14 조 1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 34 조 4 항 각호

다) 당사/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당사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 34 조 3 항 각호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나
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 을 설치하는 경우	제 34 조 2 항 각호
○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는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
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
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8조 제4항)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본 계약서 수정
이 불가피 할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해당 조문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①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서면요청이 있는 후 본사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유무를 통지하게 되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새로운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②	양도 절차 ^③	비고 ^④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그에 상응하는 가맹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교육이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 개시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①	가능 여부(조건) ^②	이전 범위 ^③	절차 ^④	기타 의무사항 ^⑤
상속	법적효력 발생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청→승인여부통지→가맹점운영권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당사 승인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당사 승인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하되, 가맹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점 전 최초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대리인, 수탁인 또한 같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 당사의 승낙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와로샐러드]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①	경업허가 절차 ^②	비고 ^③
와로샐러드에서 판매하는 품목 및 영업방식과 영업형태가 동일한 서비스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당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와로샐러드]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0:00	주6일(월~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문의: 당사

상기한 영업시간은 권장 표준영업시간으로 지역 특성 및 영업형태에 따라 사전협의 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 제 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3에 의거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①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②	대체 가능 인력 ^③	비고 ^④
2명 이상	직접 근무 원칙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상기 종업원의 수는 가맹점사업자 수를 포함한 실제 근무하는 권장인원 수입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①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②	비고 ^③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당사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업 체크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의무사용 품목 사용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 → 운영상태 체크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프로그램취급여부, 청결 및 정돈 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월 매출, 연 매출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 광고와 제품광고 등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광고비용은 다음 표와 같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광고 실시 최소 2주일 이전에 그 광고의 성격과 전체 비용 및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통지하고 귀하는 통지수령일 2주 이내에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구분 ^①	광고 성격 ^②	부담비율		분담 절차 ^④	비고 ^⑤
		본사부담 ^③	가맹점부담		
전국광고	브랜드광고	50%	50% (전체가맹점)	산출의 근거를 서면으로 통해 제시	전국광고 (TV, 라디오, 일간지 등)
	서비스/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 없음	
지역광고	가맹점매출증진	50%	50% (지역가맹점)	산출의 근거를 서면을 통해 제시	지역단위 각 매체광고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가맹점부담액 제시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행사시행→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상동	상동
	팸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0%	판촉물 제작비용 100%	상동	상동

[당사는 가맹점의 매출활성화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공동의 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판촉물의 경우 기획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제작비용은 실비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그 밖의 판촉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사업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 및 판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당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광고나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전단지, 카탈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 [와로셀러드]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 제36조(손해배상 및 위약금) 규정에 따릅니다.

가맹계약서 제36조(손해배상 및 위약금)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제19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제34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 처리하거나 [와로셀러드]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 이천만원(₩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금 삼십만원(₩300,000원)씩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④ “가맹본부”가 제10조 3항 및 제17조에 의한 교육의 대가를 받고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받은 금액의 2배를 상

환하기로 한다.

- 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일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①	소요비용 ^②
합계		30일 내외	[00p~00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	
면접	- 개점관련 상호 의견 조율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자율 선정 후 실사)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점 승인	D-29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8	
가맹금 예치	- 은행 예치계좌에 가맹금 입금	D-27	9,800
인테리어 및 간판 공사	- 공사 실시(내장, 외장 등), 간판	D-26~6 (14~20일)	
인력 배치/교육 실시	- 가맹점 오픈에 필요한 인력 구인 - 사전 교육 실시	D-6~3 (4일)	
초도물품	- 초도물품 입고	D-2	
점포 개설	- 가맹점 오픈 및 영업시작	D-day	

상기 일정은 12평의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②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③	지급절차 ^④	비용부담 제외사유 ^⑤	비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	○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특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①	절 차 ^②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 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 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 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 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 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당사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 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 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 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 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당사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① 신용제공 상품명이 있으면 기재하기 바랍니다.
- ② 가맹본부 또는 신용제공 기관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③ 최대 제공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④ 신용 대출, 담보 대출, 가맹본부 보증 등 실제 신용이 제공되는 형태를 기재합니다.
- ⑤ 신용 제공이 가능한 조건(필요 서류 포함)을 기재하되, 양이 많은 경우 별도의 주석을 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은 경영 상 지원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조기 안정화 지원	가맹점 오픈 시 조기안정화를 위한 로열티 면제	로열티 면제	오픈일로부터 3개월	로열티 면제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1.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맹계약기간	경영컨설팅 제공	
매출부진 자금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손실분 자금 지원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1.5천만원 이하인 경우	2개월	손실분 20% 이상 지원	
홍보, 마케팅 자금지원	취약 계층 고용 시 홍보 마케팅 자금 지원	취약 계층 고용 3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	1개월	20% 이상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와로샐러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①	기한	비고 ^②
개점 전/후 최초교육	운영 교육 및 레시피 교육	이론/실습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 및 개점 직후	필수 교육
비정기 교육 (보수 및 수시)	서비스 교육 등	이론/실습	교육 필요 시 14일전 통지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와로샐러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전후 최초교육	개점 전 8시간 x 5일 (40시간) 개점 후 8시간 x 3일 (24시간)	3,300 (최초 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비정기 교육	1~3일 (신메뉴 등 교육량에 따라 변동)	실비	외부 강사 초빙 시 추가 실비 발생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남	진주신안점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79-1, 1층일부

[상기 직영점 진주신안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년 9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98,638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기재합니다. 매출액 산정근거 자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10%)은 제외하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1670-0007) 또는 가맹거래과(044-200-4938)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